

「시설 사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06. 2. 28. 제정 판 (시행 2006. 3. 1.) → 2013. 11. 25. 개정 판 (시행 2013. 11. 1.)

바뀜 5 · 신설 1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55/compare?from=381&to=382>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7:47:09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선교 70주년 기념관(대강당), 선교90주년 기념관(다목적관), 대학교회, 운동장, 테니스장, 야외, 침례탕/분수대, 손님방, 세미나실(바울관, 신학관, 제2과학관, 체육관), 체육관(주경기장) ② 차량 : 버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 버스
제3조(사용자) ① 시설 : 사용자는 재단 내 기관 및 교역자에 한 한다. ② 차량 : 사용자는 교수·직원·학생에 한 한다.	제3조(사용자) ① 시설 및 장소: 사용자는 학교의 허락을 득한 자에 한 한다. ② 차량: 사용자는 교수·직원·학생에 한 한다.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차량 사용료와 시설사용료, 장소사용료로 분류한다. 구분 사용거리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버스 100km이내 1회사용 200,000 4시간이내, 추가 1시간당 10,000 101km-300km 1회사용 250,000 6시간이내,추가1시간당 10,000 301km-500km 1회사용 300,000 8시간이내,추가1시간당10,000 501km이상 1회사용 400,000 8시간이내,추가1시간당10,000 도로비,주차비,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승용차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외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도 사용료를 납부 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장소사용(운동장/테니스장)은 주간에 실시하며, 야간 활동 시 라이트 사용은 불허한다.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현행	개정안
<u>1일사용</u> <u>80,000</u> <u>연료비 200/km</u> <u>별로 납부</u> <u>승합차</u> <u>1일사용</u> <u>80,000</u> <u>연료비 100/km</u> <u>별로 납부</u> <u>화물차</u> <u>1일사용</u> <u>80,000</u> <u>연료비 100/km</u> <u>별로 납부</u> <u>-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야기되는</u> <u>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금전적 부담원칙</u> <u>-접촉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u> <u>1. 차량사용료(휴일, 방학중만 가능)</u> <u>1. 차량사용료(휴일, 방학중만 가능)</u> <u>구분</u> <u>시설명</u> <u>사용료</u> <u>추가사용료</u> <u>(초과시간당)</u> <u>냉/난방</u> <u>비고</u> <u>기존</u> <u>선교70주년기념관</u> <u>(대강당)</u> <u>600,000</u> <u>(2시간)</u> <u>200,000</u> <u>220,000</u> <u>MultiCube-(기본2시간) 600,000</u> <u>(초과1시간) 150,000</u> <u>리허설 1회 - 200,000</u> <u>(다목적관)</u> <u>250,000</u> <u>(2시간)</u> <u>140,000</u> <u>리허설 1회 - 100,000</u> <u>대학교회</u> <u>400,000</u> <u>폐백실 사용- 100,000</u> <u>(교직원 및 대학교회 교직원</u> <u>직계50%)</u> <u>리허설 1회-200,000</u> <u>운동장</u> <u>200,000</u> <u>방송시설(앰프) 사용시</u> <u>- 100,000추가</u>	<u>평일(2시간)</u> <u>대강당</u> <u>(선교70주년기념관)</u> <u>800,000</u> <u>600,000</u> <u>200,000</u> <u>냉방</u> <u>200,000</u> <u>스크린(중앙,좌,우)</u> <u>- 300,000</u> <u>리허설 1회</u> <u>당일포함)</u> <u>난방</u> <u>250,000</u> <u>보건복지교육관</u> <u>(선교90주년기념관)</u> <u>350석</u> <u>450,000</u> <u>250,000</u> <u>100,000</u> <u>냉방</u> <u>100,000</u> <u>리허설 1회</u> <u>- 100,000</u> <u>난방</u> <u>150,000</u> <u>제2과학관(세)</u> <u>150석</u> <u>150,000</u> <u>50,000</u> <u>냉방</u> <u>100,000</u> <u>난방</u> <u>150,000</u> <u>요한관 강당</u> <u>450석</u> <u>550,000</u> <u>350,000</u> <u>100,000</u> <u>냉방</u> <u>150,000</u> <u>난방</u> <u>200,000</u> <u>야외행사</u> <u>100,000</u> <u>야외예배(안)</u> <u>무료</u> <u>침례탕/분수대</u>

현행	개정안
사용 후 주변 정리 조건	80,000
테니스장	용할 경우 - 40,000
100,000	손님방
1코트 사용 시,	50,000
오전/오후- 50,000	(\$ 50)
야간-1코트(1시간)당10,000	2인 1실 사용시
야외행사	- 70,000(\$ 70)
100,000	인성
야외예배(안)	교육관
무료	침실
단: 쓰레기 수거비	30,000
50명 미만 30,000원	총 17실
50명 이상 50,000원	강의실(1일)
100명 이상 100,000원	50,000
침례탕/분수대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80,000	장근청홀,
본 교회 침례식후 사용할 경우-40,000	음악관 합창합주실
손님방	150,000
(1박, 조식)	50,000
일반인	냉방
20,000(\$20)	100,000
2인1실 사용 시 30,000(\$3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신규	개정 내용 결의
세미나실	난방
150,000	150,000
기본 냉/난방 시간 외	일반 강의실(1일)
별도 냉/난방 없음	50,000
체육관(주경기장)	유비쿼터스실
200,000	(에스라관, 바울관)
(2시간)	100,000
1일-500,000 오전/오후-300,000	50,000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일 - 200,000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현 행	개 정 안
	<u>인성교육수련원</u> <u>(체육관2층 숙소)</u> <u>주말-50,000</u> <u>평일-30,000</u> <u>교직원사용료 무료</u> <u>체육관(주경기장)</u> <u>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u> <u>운동장(인조잔디구장)</u> <u>테니스장</u> <u>*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u> <u>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u> ② <u>차량사용료</u> <u>구분</u> <u>사용거리</u> <u>기준</u> <u>사용료</u> <u>버스</u> <u>100Km 이내</u> <u>1회 사용</u> <u>300,000원</u> <u>101Km~300Km</u> <u>1회 사용</u> <u>350,000원</u> <u>301Km~500Km</u> <u>1일 사용</u> <u>400,000원</u> <u>501Km 이상</u> <u>1일 사용</u> <u>500,000원</u> <u>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u> <u>-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u> <u>-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u> <u>정한다.</u> <u>-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u> <u>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제6조(사용절차) ① <u>시설</u> : 시설 및 장소 사용은 행사 1주전에 총무과에 신청, 승인 후 재무실에 사용료 납부한다.(사용전일까지) ② <u>차량</u> : 차량 사용은 1주전 수송계에 신청하고, 사용 직후 요금을 정산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u>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u> 소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u>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u> ③ <u>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u> 요금을 정산한다.
<신 설>	제7조(인건비지출) <u>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는 투입되는</u> 인원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기타) <u>이외의</u>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기타)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시설 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 버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자) ① 시설 및 장소: 사용자는 학교의 허락을 득한 자에 한 한다.

② 차량: 사용자는 교수·직원·학생에 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장소사용(운동장/테니스장)은 주간에 실시하며, 야간 활동 시 라이트 사용은 불허한다.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350석
450,000
250,000
100,000
냉방
100,000
리허설 1회
- 100,000
난방
150,000
제2과학관(세)
150석
150,000
50,000
냉방
100,000
난방
150,000
요한관 강당
450석
550,000
350,000
100,000
냉방
15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100,000
야외예배(안)
무료
침례탕/분수대
80,000
용할 경우 - 40,000
손님방
50,000
(\$ 50)
2인 1실 사용시
- 70,000(\$ 70)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5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소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인건비지출)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는 투입되는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